

2022년도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제20조1항에 2021년도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비용산정지수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6월 13일

환경부장관

2022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.0595로 한다.

2022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.0595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